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목 차>

1.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용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작 성 자	이름	공혜주
	담당부서 (과)	건강증진과		직급	보건주사보
	국장	곽순헌		연락처	044-202-2825
	과장	정혜은		이메일	khj24@mail.go.kr

2025. 05. 13.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곽 순 헌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흡연실 설치기준·방법 적용											
	2.규제조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											
	3.위임법령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5.5.27.~7.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대안교육기관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국민건강증진법」(’25.4.1. 공포, ’25.10.2. 시행)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 설치 등과 관련된 시행규칙 상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7.규제내용	○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 시, 기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는 시설의 흡연실 설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 실외(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에 설치하도록 규정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흡연자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th>인원수 또는 규모</th></tr> </thead> <tbody> <tr> <td>이해관계자</td><td>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흡연자</td><td></td></tr> <tr> <td>피규제자</td><td>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td><td>「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259개소 기관</td></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흡연자		피규제자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이해관계자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흡연자												
피규제자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하는 관리자	「대안교육기관법」에 따라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한 259개소 기관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예외기준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적용	0	0	0		
15.규제 정비 계획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이용자 및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에 흡연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흡연실은 옥상에 설치하거나 각 시설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거리에 설치하여야 한다.	2.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 가. 흡연실의 설치 위치 1) 법 제9조제4항제6호, 제6의2호, - ----- ----- ----- ----- ----- -----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최근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5.4.1. 공포, '25.10.2. 시행)으로 금연구역에 대안교육기관이 추가 지정
 - 대안교육기관에도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기준을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 정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시 실외로 한정
	내용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실외(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만 설치 가능하고, 건물 내 설치 불가
규제대안2	대안명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시 위치기준 현행유지
	내용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 건물 내·외부 설치 가능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건물 내부 흡연실 설치를 제한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 효과 증진	해당없음
규제대안2 (현행유지안)	해당없음	건물 내·외부에 모두 흡연실 설치가 가능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비효과적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해당없음	입법예고 시 수렴	해당없음	해당없음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은 해당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며, 시설 관리자 등의 재량으로 건물 내·외 흡연실 설치 가능
 - －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에 흡연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가목에 의거 어린이·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외(옥상 또는 출입구로부터 10m 이상)로 한정
- * (제6호)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제8호) 병원·보건소, (제9호) 어린이집, (제10호) 청소년 활동시설, (제11호) 도서관, (제12호) 어린이놀이시설, (제15호) 어린이 운송용 승합자동차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5.10.2. 시행)으로, 금연구역에 「대안 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 추가로 지정
 - － 대안교육기관도 교육시설로서, 이용하는 학생들의 건강보호 차원에서 다른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가목에 따른 흡연실 위치 기준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함

3. 규제목표

-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건강 보호

II.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본 규제는 최근 금연구역으로 지정('25.10.2. 시행)된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을 설치하려는 경우 건물 외부에 위치 하도록 하는 것으로,
 - 이를 통해,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려는 목적 달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개정사항은 흡연실 설치 시 건물 외부에 위치하여야 하는 금연구역 시설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기술기준이나 시험·검사·인증 관련 법령과 무관하므로 기술규제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개정사항은 모든 대안교육기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경쟁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개정사항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대안교육 기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본 규정은 아동·청소년 건강보호를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
의거한 아동·청소년 이용 시설의 흡연실 설치 위치기준을 대안교육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으로 기존 규정과 같이 일몰 설정 대상이 아님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흡연실 설치위치를 정확히 규정하는 사안으로 포괄적 규정 사항에는 해당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건물 내부에는 설치할 수 없고,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옥상 및 출입구로부터 10m 떨어진 위치에 설치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고 있어 관련사항을 적용할 수 있음
네거티브 리스트		대안교육기관에 재량 설치 시설인 흡연실을 설치할 경우에만 흡연실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한 사항이므로 포지티브 리스트 방식에 해당
사후 평가관리		흡연실 설치 시 준수해야할 필수사항에 해당하므로 사후 평가 관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 흡연실 설치시에도 해당 사항이 적용되지 않고, 개정사항은 설치 위치를 정하는 사항이므로, 신기술 적용을 위한 규제 면제나 유예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해외사례

WHO FCTC(담배규제기본협약)* 권고에 따라,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담배 연기로부터 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

※ (참고)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FCTC) 개요

- (정의)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담배소비 및 흡연율 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제 공조체계 구축과 필요한 조치들을 제시한 보건 분야 최초의 국제협약('03년 채택, '05년 발효)
 - '25년 현재 183개 당사국이 참여 중이며, 우리나라는 '05년 비준하여, 국내법과 동일 효력을 가짐
- (협약구성) 일반적 다자조약 형태로 구성(총 11장 38개 조항)
 - 주요조치 및 의무(3조~22조): 담배규제를 위한 실질적 조치사항
 - 제도적 장치 및 절차(23조~38조): 조약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자원, 사무국, 개정 등 협약 관련사항 규정
- (이행 가이드라인) 당사국이 자국 내에서 협약 이행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협약 본문의 세부 사항 규정

조항	내용
제5조 3항	담배업계의 상업적 및 기타 기득권으로부터 담배규제와 연관된 공중보건 정책 보호
제8항	담배연기의 노출로부터 보호
제9조·제10조	담배제품 성분 및 담배제품 공개에 관한 규제(일부)
제11조	담배제품 포장 및 라벨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인식 제고
제13조	담배광고, 판촉 및 후원
제14조	담배 의존 및 금연에 관한 수요 감소 조치

- 우리나라는 FCTC 협약 당사국으로서, 흡연실 설치 자체를 지양

- (WHO FCTC 가이드라인 제23조 및 제4항) 23. 제8조는 실내 사업장, 실내 공공장소, 대중교통, 적절할 경우의 기타 공공장소에서 담배연기에의 노출로부터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효과적 조치를 취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 24. 이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 모든 실내 사업장, 모든 대중교통 시설과 가능한 기타 공공장소에서 간접흡연 노출로부터 자유로운지 확인하여 보편적인 보호를 제공할 의무를 만든다. 종략. 각 당사국은 담배규제기본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포괄적인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25. 간접흡연 노출에 대한 안전한 수준은 없으며 제1차 당사국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환기, 공기 여과, 흡연구역 지정 등의 공학적인 접근방법으로는 담배연기 노출로부터 보호받지 못한다.

관련 국제기준	일치여부	불일치 사유(불일치 시에 한함)
WHO FCTC	일치	

○ 타법사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공중위생영업의 종류별 시설 및 설비 기준,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제6조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시설 및 장비 기준, 장사법 시행령 제18조 사설화장시설과 사설봉안시설의 설치기준 등 규정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시 실외로 한정>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시 실외로 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 의 실효성

1. 규제 의 순응도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대안교육기관의 소유자등이 규제 적용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시설인 학교, 유치원 등에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므로 피규제자의 규제 준수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금연구역 및 흡연실 설치 현황(국민건강증진법 제4항 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

	금연구역 시설(개소)	흡연실 설치(개)		금연구역 시설(개소)	흡연실 설치(개)
전국	20,033	20	경기	4,487	14
서울	2,146	0	강원	909	5
부산	1,019	0	충북	748	0
대구	784	0	충남	1,156	0
인천	910	0	전북	1,296	0
광주	594	0	전남	1,341	0
대전	535	0	경북	1,598	1
울산	445	0	경남	1,581	0
세종	164	0	제주	320	0

※출처: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23년 기준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행정적 집행가능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의 관리·감독 권한은 관할 지자체에서 보유하고 있어 행정 집행이 가능, 개정사항으로 인한 추가 소요 미발생

○ 재정적 집행가능성

지자체에서 금연구역 및 흡연시설의 점검·관리 사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 예산 소요 없음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25.4.1. 공포, 25.10.2. 시행)으로 금연구역에 대한 교육기관이 추가 지정(민주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진욱의원 발의)
 - 대안교육기관에도 기존 아동·청소년 이용시설의 흡연실 설치 위치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시킬 필요가 있어 시행규칙 정비 추진

2. 향후 평가계획

-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법시행 시점('25.10.2.)에 맞춰 관련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교육부 등) 및 지자체에 사전 안내를 실시하고 사후관리 모니터링 지속

3. 규제 정비계획

법령명	규제조문	규제 폐지·완화 내용	추진 일정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4. 종합결론

-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습을 제공하는 교육시설로 흡연실 설치 위치를 건물 외부로 제한 함으로써,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타당
 - 또한, 이미 유사한 교육시설(「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등)이 동 규정을 적용받고 있는 점, 개정사항의 비용편익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규제준수 부담은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됨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 (년)	할인율(%)	단위
2025	2025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시 실외로 한정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 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대안교육기관에 흡연실 설치시 실외로 한정>

①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영향집단명	대안교육기관의 소유자·점유자·관리자
활동제목	흡연실의 설치
비용항목	설비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연간균등
산식	
근거설명	○ 대안교육기관은 학교밖 청소년에게 학습을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교육시설로, 학습자와 학부모의 민원 발생 소지를 고려할 때, 해당 시설에 흡연실 설치 실제 사례는 희박할 것으로 예상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른 금연구역(「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흡연실 설치 현황(전체 시설 20,033개소 중 20개, 금연통합정보시스템 '23년)을 고려하면 대안교육기관도 유사할 것으로 예상 - 개정사항은 흡연실의 설치 위치를 실외로만 한정하고 있으며, 실외 흡연실 기준은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는 것뿐이므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 비용은 극히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